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구 미 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용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기금명 :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2) 주관기관 : 경상북도
 - (3)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4) 출연금액 : 금228,000천원
 - (5) 조성목표 : ('93~'17년)2,000억원 → ('27년까지)3,000억원
 - (6) 재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
-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나.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 법인, 농어업 관련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2)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4) 사업추진절차

- '24. 9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24. 9~10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24.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25.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사업자⇒시)
- '25.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25. 1~12월 : 융자실행(금융기관)

다. 출연의 필요성

- (1)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 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
- (2)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

라.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1)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계	'93~'23년 출연실적	'24년 출연액	'25년 출연계획	비고
구미시	7,164	6,708	228	228	

(2)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3년까지	'24년	'25년
재	계	283,795	267,620	8,323	7,852
	도	68,424	65,924	-	2,500
원	시·군	120,756	112,052	4,352	4,352
	금융기관	25,769	23,814	955	1,000
별	운영수익	68,846	65,830	3,016	-

(3) 연도별 지원실적(구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농가수(호)	331	201	12	17	13	11	8	7	20	14	28
융자금액	35,621	18,424	1,980	2,014	2,124	1,720	790	643	2,670	2,756	2,5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예산재정과장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농어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3. 제4조에 따른 차입금
4. 그밖의 기금운용수익금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등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도 출연금 조성 내역에 준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228	228	228	68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	-	-	-
도 비	-	-	-	-
시 비	228	228	228	684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228	228	228	684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김진아(☎480-5773)

소 관 부 서		농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현 선
	팀 장	김 호 섭
	담 당 자	김 진 아 (480-5773)